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5. 16 선고 2024가단34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0, 21, 34, 35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회사 부분 12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3. 5. 28.부터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